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슈리포트

발행 2023. 07. 2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 대상  
정보공개청구 자료 공개

# 목차

---

<b>목차</b>	<b>2</b>
<b>요약</b>	<b>3</b>
<b>취지와 모니터링 개요</b>	<b>4</b>
1. 취지	4
2. 모니터링 개요	5
<b>모니터링 결과</b>	<b>6</b>
1.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공개’현황	6
2.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현황_‘제출’현황 등	7
3.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현황_부실제출 관련	9
4. ‘미제출 지방의원’ 등에 대한 민간경력의 교차검증	10
<b>부실제출 사례</b>	<b>12</b>
A.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경우, 주요업무내용을 “없음”으로 제출함.	12
B. 충청북도청주시의회 임정수의원, 박노학의원의 경우, 직위와 주요업무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제출함.	
C. 경기도고양시의회 의원인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관련하여 제출의무자가 소속되었던 기관의 이름을 비공개하여 공개함.	13
<b>개선방향</b>	<b>14</b>
1.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재	14
2. 기관장 등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관리·감독 필요	14
3.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상시 공개	15
<b>참고자료</b>	<b>16</b>
1. 대구광역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내> 중 본문 주요내용	16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2.07.06.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중 제출항목에 대한 안내	17

## 요약

---

- 20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9기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등)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함.
  - 점검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로 구분됨(법 제2조 제3호).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함.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관련 자료를 공개함. 한편, 지방의회의 경우, 1건의 비공개, 2건의 부존재 사례가 확인됨. 이에 비공개한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이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의회 대상으로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임.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122명, 지방의원은 2,471명임. 한편,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52건, 지방의원의 경우, 7,776건으로 확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50%, 지방의원의 46%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제출함.
  - 또한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관련한, ‘민간부문 업무활동’이 가장 많았고 “대리, 고문·자문 등”이 다수 제출됨.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제출했거나, 애초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의원 1,394명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공개된 경력 관련 정보, 당선 이후 겸직 관련 자료 등과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각각 412명, 191명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했어야 했다고 추정됨.
-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배경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재, ▲기관장 등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관리·감독 필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상시 공개 등의 관점에서 제도개선과제가 도출됨.

# 취지와 모니터링 개요

## 1. 취지

-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
-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행할 의무가 부과됨.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은 ‘고위공직자’로 구분됨([법 제2조 제3호](#)).
- 이해충돌방지법은 크게,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5개의 신고·제출의무 중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법 제8조](#) 등. 아래 <표1> 참고)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등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장 또는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함([법 제25조 제2항](#)).
-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제출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sup>1</sup>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시민과 언론의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등에 따라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여 제출현황, 성실제출 여부 등을 분석함.
- 해당 이슈리포트는 제출의무자가 민간부문 업무활동이 없어 ‘해당없음’ 등으로 제출한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함.<sup>2</sup>

<표1> 이해충돌방지법 상 관련 조항

<sup>1</sup> 다만, 현행 법률에서는 공개 여부를 기관장의 재량으로 남겨두고 있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제출내용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함.

<sup>2</sup>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국민권익위원회 2022.03.31.)에는 취임 전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이 없더라도 ‘활동내역이 없다’고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번 정보공개청구과정에서는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함.

###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할 경우: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2.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대상: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

2) 자료수집: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 1차 : 2022년 9월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인이 제출한 민간부문업무활동내역서><sup>3</sup>

b) 2차 : 2023년 5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선인이 제출한 민간부문업무활동내역서 >

c) 데이터 :  공유\_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3) 미제출자 분석 데이터

- 경력데이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중 당선인 명부 데이터
- 겸직데이터 : SBS 스포츠 데이터 및 정보공개청구자료

<sup>3</sup> 서울특별시 관련 자료는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022년 7월 유사한 취지로 정보공개청구하여 취합한 자료와 교차검증함.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14418>)

# 모니터링 결과

## 1.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공개’현황

❖ 이해충돌방지법 상 제출한 내용에 대한 상시적인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의 결정 여부 등을 점검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가 정보공개청구에 공개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함.
- 지방의회(지방의원)의 경우, 1건의 비공개, 2건의 부존재 사례가 확인됨.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중 경기도성남시의회만이 의원의 이름을 비공개하고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함. 비공개사유는 ‘개인사생활 침해’임.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개별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경상북도울릉군의회와 전라남도화순군의회(이하 화순군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전원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제출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함. 이에 ‘부존재’로 구분함. 그러나 경상북도울릉군의회 중 3명, 전라남도화순군의회 중 5명의 경우, 선거와 관련한 자료 또는 당선 후 검직신고와 관련한 자료에서 제출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민간에서의 경력이 확인됨.

<표2>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정보공개청구 결과\_공개 여부 등

	공개	비공개	부존재	합계
지방자치단체(단체장)	243			243
지방의회(지방의원)	240	1	2	243

\*비공개 : 성남시의회 / 부분공개 : 화순군의회, 울릉군의회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명 비공개에 따른 통계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은 공직의 취임 전부터 형성되어 온 사적이해관계를 미리 확인하여 공적업무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의 상황을 예방하고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제출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
- 이해충돌방지법의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22년 7월 6월 각급 기관에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세부지침>(이하 권익위 세부지침)을 배포함.<sup>4</sup> 권익위는 세부지침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sup>4</sup>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6.,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0154](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0154))

제출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안내했고 또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민간 경력 관련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공개를 설명함.

## 2.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현황\_‘제출’현황 등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기관장 등에게 제출했는지 등을 살펴봄.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제출의무자로서 임기가 2022년 7월 1일 시작됨. 따라서 임기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관장 또는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는 제출의무자에게 2022년 8월 1일(월)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함(참고: 참고자료1)
-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122명, 지방의원은 2,471명으로 확인됨.

<표3>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정보공개청구 결과\_제출 여부 등(단위: 명)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현원	제출 자치단체장	현원	제출 지방의원
서울특별시	26	20	539	310
부산광역시	17	12	229	170
대구광역시	9	1	153	100
인천광역시	11	5	163	103
광주광역시	6	2	92	68
대전광역시	6	2	85	50
울산광역시	6	3	72	44
세종특별자치시	1	1	20	14
경기도	32	17	619	365
강원도	19	4	223	149
충청북도	12	7	171	123
충청남도	16	8	225	153
전라북도	15	7	238	152
전라남도	23	11	308	198
경상북도	24	10	349	223
경상남도	19	12	334	221

제주특별자치도	1	0	45	28
합계	243	122	3,865	2,471
비율		50%		64%

- 현원 기준(2022년 9월, 2023년 5월 정보공개청구 시점 등)으로 대략 절반의 제출의무자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함.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제출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50%, 지방의원의 46%로 나타남.
- 지방의회의 경우, 총 24개<sup>5</sup>의 지방의회에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반면, 경상남도울릉군의의회, 전라남도화순군의의회 경우, 소속 지방의원 전원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답변함.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출된 ‘민간부문 업무활동’에서 확인되는 고위공직자가 공직 취임 전 민간에서 활동한 경력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장 452건, 지방의원 7,776건임.

<표4>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정보공개청구 결과\_민간경력 건수 등(단위: 건)

	자치단체장 민간경력	지방의원 민간경력
서울특별시	85	787
부산광역시	33	469
대구광역시	2	188
인천광역시	11	285
광주광역시	3	935
대전광역시	8	104
울산광역시	5	133
세종특별자치시	2	32
경기도	75	1,049
강원도	26	431
충청북도	28	462
충청남도	27	407
전라북도	25	505
전라남도	36	597
경상북도	38	618
경상남도	48	686

<sup>5</sup> 강원도 동해시의의회, 강원도 삼척시의의회, 강원도 양양군의의회, 강원도 평창군의의회, 경기도 구리시의의회, 경기도 부천시의회, 경기도 안성시의의회, 경기도 양주시의회, 경상남도 창녕군의의회, 경상북도 고령군의의회, 경상북도 예천군의의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의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의회, 울산광역시 남구의의회, 전라남도 곡성군의의회, 전라남도 목포시의의회, 전라남도 무안군의의회, 전라북도 진안군의의회, 충청남도 계룡시의의회, 충청남도 부여군의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의회, 충청북도 증평군의의회, 충청북도 진천군의의회



제주특별자치도	0	88
합계	452	7,776

- 또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구체적인 항목 별로 구분하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전체의 6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리, 고문·자문 등”이 다수 제출됨.

<표5>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정보공개청구 결과\_민간경력 비율

구분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80	62%	3,475	45%
대리, 고문·자문 등	79	17%	1,500	19%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51	11%	1,490	19%
기타	31	7%	654	8%
구분없음	11	2%	657	8%
합계	452	100%	7,776	100%

### 3.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현황\_부실제출 관련

- 권익위 세부지침은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적시 등을 안내하고 있음.
- 또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관련하여, 제출의무자가 민간에서 소속된 기관 등의 업무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참고: 참고자료2).
- 정보공개청구하여 취합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식적으로 안내되고 있는 제출양식<sup>6</sup> 임에도, 제출양식 상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례,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됨.
- 부실제출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중 일부를 미기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직위로

<sup>6</sup>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대체한 경우로, 제출된 민간에서의 경력 전체 8,228건(452건 + 7,776건)의 제출 중 2,737건(33%)의 제출내역에서 부실한 제출이 드러남.

- 다수의 제출의무자가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을 형식적인 수준으로 기재하여 해당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표6>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정보공개청구 결과\_부실제출 현황 등(\*부실제출 상세현황 중복 포함)

	제출건수	부실제출건수	부실제출 상세 현황			
			민간업무 구분 안함	활동기간 미기재	담당업무 내용 미기재	업무내용을 직위로 기재
자치단체장	452	101	11	1	67	22
지방의원	7,776	2,636	657	81	1,643	255
총계	8,228	2,737	668	82	1,710	277

- 정보공개청구 결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상 제출해야 하는 주요 항목인 ‘기관명(업체명)’을 비공개한 사례가 발견됨<sup>7</sup>. ‘기관명(업체명)’ 정보는 사적 이해관계나 이해충돌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정보임에도 기관 차원에서 비공개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7명(경북고령군수\_이남철, 전남여수시장\_정기명, 서울동대문구청장\_이필형, 서울강서구청장\_김태우, 서울금천구청장\_유성훈, 경남통영시장\_천영기, 경남고성군수\_이상근)이 민간부문에서 소속되었던 기관명(업체명)을 비공개함.
  - 또한, 지방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와 경기도고양시의회 경우, 모든 지방의원이 민간부문에서 소속되었던 기관명(업체명)을 비공개함.

#### 4. ‘미제출 지방의원’ 등에 대한 민간경력의 교차검증

- 권익위는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제출한 경우에 대해 공직 취임 전 민간에서의 경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 이에 지방의원 중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제출했거나, 애초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방의원의 당선 전 민간에서의 경력 여부를 확인해 봄.

<sup>7</sup> 애초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례와 정보공개청구에 대답하면서 익명화하여 공개한 사례 등이 혼재되어 있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자체가 애초에 제출한 내역서 원문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아. 앞에 2개 사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다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함에 있어, 주요한 정보를 누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결과는 동일하다고 판단됨.

- 검증대상인 지방의원이 선거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경력사항에서 (현)경력데이터와 당선 이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겸직 관련 자료와 교차검증함.<sup>8</sup>

<표7>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정보공개청구 결과\_제출내용의 검증(단위: 명)

	미제출의원	적발의원 (중복불포함)	제출의무 확인됨 (경력데이터)	제출의무 확인됨 (겸직데이터)
광역	353	134	105	50
기초	1,041	389	307	141
총계	1,394	523	412	191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제출했거나, 애초에 제출하지 않은 지방의원 1,394명 중 523명(37%)은 법률 상 제출의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세부적으로 선거과정에서 공개된 경력 관련 정보, 당선 이후 겸직 관련 자료 등과 비교해본 결과, 각각 412명, 191명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가 있는것으로 분석됨.
  -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표경력사항 2개를 대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고 겸직현황 관련 자료의 경우 3년 이내의 민간 경력을 파악하기 위해 겸직신고시 겸직기간을 공개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비교검토함.
  - 따라서, 공직 취임 전 민간에서 활동한 경력이 존재하나 이를 적절히 제출하지 않은 지방의원의 실제 규모는 위 비교결과보다 크다고 예상됨.

<sup>8</sup>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내역에 대해 제출해야함. 따라서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경력 중 ‘현직’경력을 비교했으며, 의회사무처에 제출한 겸직현황의 경우 3년 이내의 겸직 현황과 비교함. 또한 권익위의 세부지침에 따라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 등을 제외한 민간경력에 대해 교차 검증함.

# 부실제출 사례

A.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경우, 주요업무내용을 “없음”으로 제출함.

■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최진봉	소속	부산광역시 중구청
	직위(직급)	중구청장	임용일	2022.07.0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2001.05.08.~2020.04.30	㈜시티프라자	이사	없음
1996.10.18.~	부동산사업자	공동사업자	없음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B. 충청북도청주시의회 임정수의원, 박노학의원의 경우, 직위와 주요업무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제출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제1호)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제2호)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기간	대상 기관	소재지	활동내역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제3호)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10.03.25. ~19.07.10	금성전기주식회사	전기업 등	청주시	대표이사	대표이사
기타					
작성일자 : 2022년 6월 10일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제1호)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제2호)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기간	대상 기관	소재지	활동내역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14.07. ~21.07.	충북 장애인 재활협회	청주시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제3호)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04.01.02 ~ 20.06.05.	하이로드케이팝	농자재 등	청주시	대표	대표
기타					
작성일자 : 2022년 6월 10일					

**C. 경기도고양시의회 의원인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관련하여 제출의무자가 소속되었던 기관의 이름을 비공개하여 공개함.**

- 정보공개청구로 취합한 자료를 엑셀의 형태로 정리함.

제출인·신고인				업무활동 내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업무활동내역	근무기간(활동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업무내용	비고
고덕희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20.12.~2022.6.30.	OO협회 등 4개소	회원 등	여성단체	
권용재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18.10.1. ~ 2022.6.1.	OO회사 등 2개소	이사	프랜차이즈 운영·관리	
권용재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2020.1.13. ~ 현재	OO회사 등 2개소	대표	아동복 온라인 판매	
김미경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21.8.1. ~ 2022.7.8.	돌봄방문요양센터	대표	재가복지	
김민숙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15.2.17. ~ 2022.7.19.	OO아트	대표	연출, 기획	
박현우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20.5.1. ~ 2020.7.31.	OO컴퍼니 등 3개소	이사	사업기획 및 경영	
박현우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2021.9.27.~2022.6.7.	OO조합 등 2개소	등기이사	사업기획	
박현우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기타	2021.9.28.~2022.6.7.	OO조합	조합원	행사기획 및 청년교육 등 주요 사업 참여	
박현우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대리, 고문·자문 등	2021.9.1. ~ 2022.6.30.	OO자문회의 등 2개소		통일 관련 정책제언	
신인선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21.10.~	OO아이들 등 2개소	사무총장	위탁가정 후원 봉사단체	
신인선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대리, 고문·자문 등	2021.6.9.~2023.6.8.	OO협회 등 2개소	심의위원	심의회 심의	
신현철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21.10. ~ 2022.5.	OO임주자대표회의	회장	아파트관리	
신현철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2019.12. ~ 현재	OO회사 등 2개소	대표	수제맥주, 양식판매	
안중돈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16.1.2. ~ 2022.6.30.	OO협회	지회장	협회관리	
안중돈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2007.1.22. ~ 현재	OO설계공사	대표	총괄	
엄성은	고양시의회	시의원	2018.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15. ~ 현재	OO연구소	대표	관련업무 전반	
엄성은	고양시의회	시의원	2018.7.1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2020. ~ 현재	프로젝트OO	대표	관련업무 전반	
원종범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2005.12.1. ~ 2020.5.	OO여행사	대표이사	업무총괄	
임홍열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21.7.15. ~ 2022.6.5.	OO연구소 등 2개소	소장	총괄	
장예선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15.6.15. ~ 2021.6.15.	OO주식회사	사내이사	관리 및 회계	
정민경	고양시의회	시의원	2022.7.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2021.2.1. ~ 2022.5.12.	OO사단법인	이사	업무에 관한 사항 의결	

# 개선방향

---

## 1.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재

- 현행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법률자문 등과 같이 형식적인 수준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다수임. 한편, 일부 사례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상 정해진 양식에서 벗어나 제출한 사례도 확인됨. 제출내용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서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 민간에서의 경력을 관리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이해충돌을 판단하기 위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 2. 기관장 등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관리·감독 필요

- 제출의무자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고위공직자임. 그런데 법률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법 제8조 제1항](#)), 기관장이 제출의무자인 경우,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5조 제2항](#)).
- 이 경우, 조직구조 상 하급자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 또는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불성실한 제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등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관리와 제출에 있어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또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을 권익위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3.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상시 공개

- 법률에는 제출내용의 공개 여부를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해충돌의 관리, 부패·비위의 사전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출내용은 대부분 고위공직자의 경력이므로 선거, 임명을 위한 청문절차, 재산공개제도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나는 정보가 적지 않음.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비공개할 이유가 크지 않음.
- 또한, 제도가 제출의무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제도임. 제출의무자가 숨길 경우,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함. 따라서 제출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가 언론, 이해관계자 등이 검증하여 허위제출과 부실제출을 검증하도록 해야 함.

# 참고자료

## 1. 대구광역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내> 중 본문 주요내용

- 정보공개사이트에서 확인함.

파워풀대구페스티벌(7.9.-10.국채보상로 일원) / 2022 대구치맥페스티벌(7.6.-10.두류공원)



# 대 구 광 역 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971(2022.7.6.)호에 의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022.5.19.)에 따라 우리 시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했던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시장의 경우에는 시 감사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청렴포털 <http://ep.clean.go.kr> 포함)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상 해당 고위공직자(6명) : **시장**, 행정(경제) 부시장, 경자청장, 자경위 위원장(사무국장)
2.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민선8기에 새로 선출된 시장님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붙임1] 양식에 따라 작성(붙임2 유의사항 참고) 하시어 **2022. 8. 1.(월)까지**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사항 주요안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 제출 사항
1 법인·단체에 재직할 경우	기관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붙임 : 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협조 동의서 1부.  
2.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유의사항 1부. 끝.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2.07.06.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중 제출항목에 대한 안내

3. 제출 항목별 세부 내용

①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명칭 및 소재지)** 법인·단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 **(근무기간)** 법인·단체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을 작성
- **(직위·직급)** 재직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법인·단체의 업무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OO전자는 반도체 개발 및 통신장비·휴대폰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본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예산편성, 결산서 작성, 감사보고서 작성,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② 대리, 고문·자문 활동

- **(기관명)** 임용 전 3년 이내에 대리했거나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기관의 정식 명칭(대리·고문·자문한 대상이 개인인 경우 성명)을 작성
  - ※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법인·단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는 작성 제외
  - 개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서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소속하여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 작성
    - ※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 법인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제3자가 없으므로 소속 법인·단체명을 기재
- **(활동기간)** 기관 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기간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대리, 고문·자문 제공 관련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위임장, 자문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③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 **(업체명 및 소재지)** 관리·운영했던 업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 **(근무기간)**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기간을 작성
- **(직위·직급)**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업체의 업무 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본인이 관리·운영했던 OOO은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허가를 받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음료를 판매·제공했던 업체임. 본인은 해당 업체의 사장으로서 음료 발주, 재고 관리, 업소 관리 등 카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음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슈리포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발행일 2023. 07. 20.

발행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 당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02-2039-8361 / cmj@opengirok.or.kr

※ 본 자료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펼쳐 온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소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Local](http://www.peoplepower21.org/Local)